

2008. 07. 15(화)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6.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7. 04.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실용조직
기조에 따라 유사기능 및 세분화된 기구를 통폐합 및 조정
하여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 본청의 실과단의 직제순 변경 및 실과통합, 명칭변경
(안 제3조).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주민
생활지원과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
- 종합민원실 ⇒ 민원봉사과로 명칭변경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 전략사업추진단 ⇒ 1010추진단으로 명칭변경

나. 한시기구 만료 및 업무추가 (안 제3조).

- 혁신분권업무(행정과) ⇒ 삭제
-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업무(1010추진단) ⇒ 추가
- 기업유치 업무(1010추진단) ⇒ 추가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번호 변경(안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1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6.23.~7.03.)결과 : 재난안전관리과 명칭변경 반영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거창군의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여 1과를 감축하는 것과,
- 과·실·단 명칭 변경과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은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전략사업추진단을 1010추진단으로 하고,

업무 추가는 전략사업추진단에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하는 것임.

- 그런데 과·실·단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함께 변경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에서 과·실·단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변경될 수 있도록 붙임 내용과 같이 부칙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을 “1010추진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②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③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④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⑤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⑦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 장”으로 한다.

⑧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⑫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⑬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5조 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을 “1010추진단장”으로 하며, 제20조제4호 중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제20조제6호 및 제7호 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을 각각 “1010추진단장”으로 한다.

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을 “1010추진단장”으로 한다.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

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6.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7. 04.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유사기구 통폐합 및 조정으로 기능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종류별 정원 감원(안 별표) : 678명 → 650명(△28명)
 - (1) 일반직 감원 : 4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4명
 - (2) 지도직 감원 : 4명
 - (3) 기능직 감원 :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10급 3명
 - (4) 별정직 감원 : 6 ~ 7급 1명(16명 → 15명)
- 나. 기관별 정원 변동(안 별표)

- (1) 본청 : 269명 → 275명(증6명)
- (2) 의회 : 14명 → 14명(변동 없음)
- (3) 농업기술센터 : 61명 → 57명(△4명)
- (4) 보건소 : 72명 → 66명(△ 6명)
- (5) 사업소 : 59명 → 50명(△ 9명)
- (6) 읍 : 45명 → 41명(△ 4명)
- (7) 면 : 158명 → 147명(△11명)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조정 : 4급 → 5급

라. 한시정원 삭제(안 부칙 제2항)

- (1) 혁신분권업무 : 3명(6급1명, 7급1명, 8급1명)
- (2) 복식부기업무 : 2명(6급1명, 8급1명)
- (3) 일제강점하피해조사업무 : 1명(7급1명)

마. 별표 :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6.23~7.3)결과 : 재난안전관리과 명칭변경 반영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조직은 통폐합하고 작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총 정원 678명에서 2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타 시·군 조례 개정 사항(2008. 7. 10일 기준)

시 군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	공포	비고
창 원	7.14(예정)			7월 임시회 상정 예정
마 산		부결(6.24)		
진 주			7. 04	
진 해			7. 14	
통 영			7. 09	
사 천			6. 30	
김 해			6. 23	
밀 양				7월말 계획
거 제		보류(7.8)		
양 산			6. 27	
의 령				안 작성 중
함 안	6. 16	6. 30	7. 04	
창 녕		6. 27		
고 성	6. 20		7. 09	
남 해	7. 04			
하 동	6. 17	6. 27	7. 04	
산 청	6. 12	6. 18	7. 01	
함 양				안 작성 중
합 천	6. 16	6. 27	7. 04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번호 제2008 - 29호>

〔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07. 07.

나. 제 출 자 : 강창남 의원 외 1명

다. 회부일자 : 2008. 07. 09.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정함(안 제2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다.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반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공개
라. 공개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등을 공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의 공개대상을 군수와 군의회의장으로 하고, 공개기준은 행정안

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하고

- 안 제3조에서 공개방법은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반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거창군청 및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공개하고
- 안 제4조에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개인·법인 등의 명의를 제외한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으로 하였음.

○ 이 조례안은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7. 07.
- 나. 제출자 : 강창남 의원 외 1명
- 다. 회부일자 : 2008. 07. 09.

2.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바,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육·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수립(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

-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
 - 기본소양교육, 자활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
 - 군수는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기관단체와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사업 지원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제6조·제12조·제1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그 밖에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뜻을 말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구성에 대한 것으로,
 -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기본 소양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생활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아동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의 내용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에서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 공포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향후 상위법 제정 여부에 따라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